

● 제320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212)

2023. 09. 06.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서울특별시시장 제출】

의안번호 1212

### I. 동의안 개요

#### 1. 제출자 및 제안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시장  
나. 제안일 : 2023년 8월 14일  
다. 회부일 : 2023년 8월 21일

####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전문적이고, 내실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시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시 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서울시 복지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 1) 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구 분	시설현황	
본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5층, 8~10층)</li> <li>- 전용면적 : 3,665㎡</li> <li>- 주요시설 : 정책연구실, 서비스품질관리본부, 지역복지통합본부, 경영기획실 등</li> </ul>	
흑석동 별 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치 : 서울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6층)</li> <li>- 전용면적 : 814.64㎡</li> <li>- 주요시설 : 자립지원본부, 서울복지교육센터,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등</li> </ul>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주요사업

- 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 복지 분야 평가·심사 및 인증
- 복지 분야 교육 및 자문
- 복지 분야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 지역복지 활성화 지원
- 저소득·취약계층을 위한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다. '24년 총 소요예산(안) : 금92,346,573천원

라. '24년 예산 산출근거(안)

○ 사업비 : 73,142,842천원

○ 일반관리비(인건비, 운영경비 등) : 19,203,731천원

#### 마. 출연의 필요성

-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 선도적 복지정책 개발 및 확산, 사회복지서비스 품질 강화, 지역중심 복지통합 서비스 지원, 시민 일상 속 복지욕구 대응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복지공동체 서울을 만들기 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 1 동의안 제출 경위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sup>1)</sup>에 따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의 2024회계연도 출연여부에 대하여 예산편성 사전절차로써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 「지방재정법」 과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sup>2)</sup> 는 서울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매년 출자·출연해온 기존 기관이라 할지라도 그 적용대상이 되어 미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출자 또는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서울시의회의 의결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출자·출연에 대한 의회 동의 및 보고 절차와 동의안 제출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sup>3)</sup>을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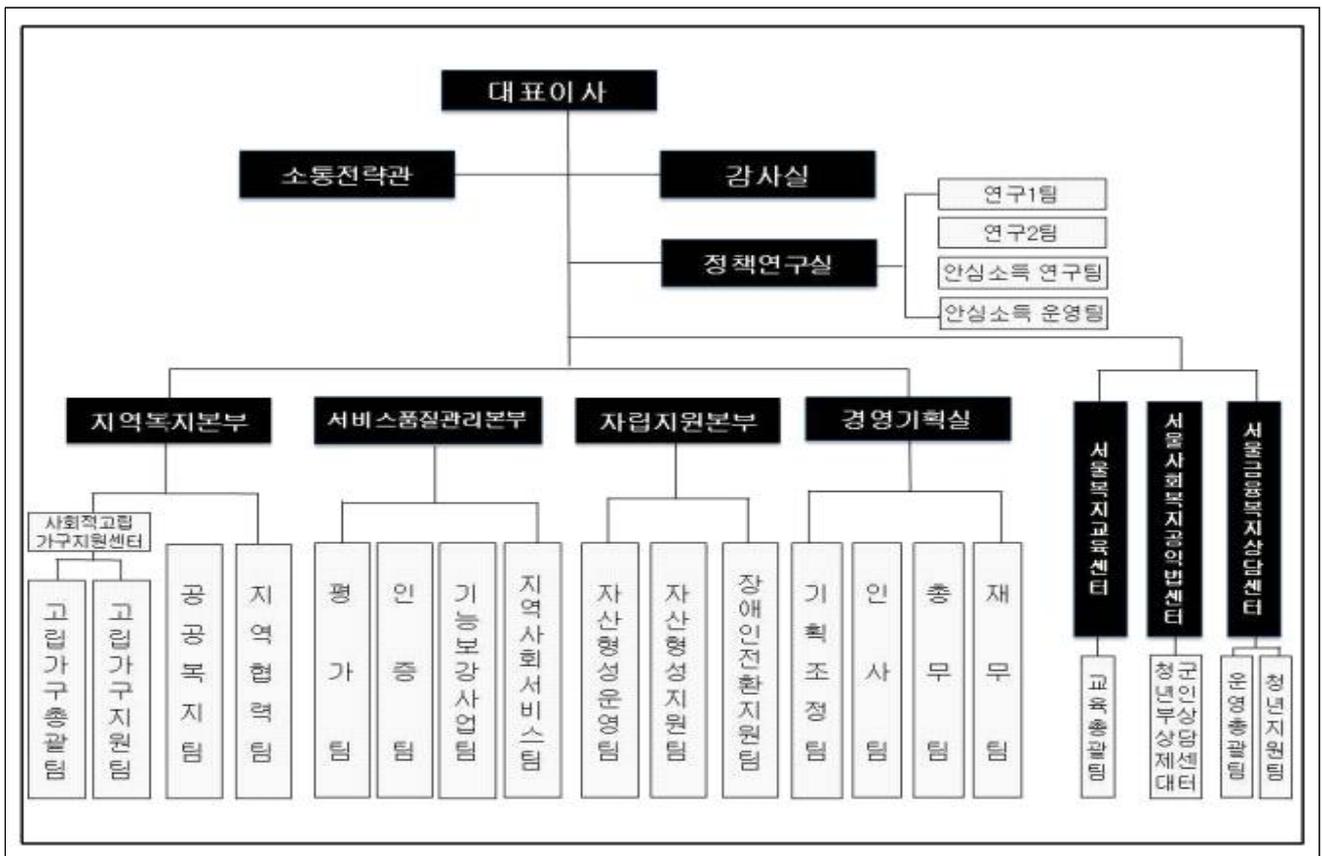
-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 제22조의3(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4(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22조의 3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이사회 회의록
  7. 결산 보고서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 2 복지재단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검토

- 복지재단은 서울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함으로써 서울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3년 「민법」 제32조 및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설립된 재단법인(비영리공익법인)임.

〈표〉 서울시복지재단 조직도

(’23. 7월. 기준)



- 현재 인력 정원은 187명, 현원 185명이며, 상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표〉 서울시 복지재단 정·현원표

(’23. 7. 31 기준, 단위 :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소계	일반직·특정직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미화직군	임피제별도직급
정원	187	1	186	2	10	22	28	29	56	37	2	-
현원	185	1	184	2	9	22	29	27	58	32	2	3

※ 기간제근로자 39명 별도

〈표〉 서울시 복지재단 최근 5년 인원 변화 및 인건비 변화

(단위: 천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비고
인원 (정원/현원)	187/185	180 / 178	180 / 176	171 / 170	164 / 162	
정규직 인건비	12,379,018	11,820,387	11,293,833	10,596,225	9,837,448	수당, 퇴직급여 포함

- 2023년 복지재단은 지역복지본부에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에 청년지원팀 조직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되며, 인력 변화에 따라 인건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이와 같이 신규사업 시행에 따라 복지재단의 조직을 신설하고, 그에 따라 인력 규모를 확장하는 것은 인건비의 확대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출연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예산 부담이 될 소지가 있음.

- 집행기관은 서울시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출연금을 편성·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본예산 기준 811억원으로 2022년 598억원 대비 213억원 증가하였으며, 출연금은 2022년보다 252억원 증가한 758억원임.

〈표〉 서울시 복지재단 예산현황 (본예산 기준)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합 계	81,165	59,856	50,349	45,155	38,048
출연금	75,855	50,680	41,835	38,636	32,359
사업수입	1,087	525	380	364	360
사업외수입	2,249	2,035	2,282	2,313	2,346
잉여금	1,975	6,616	5,852	3,842	2,983

- 2023년 복지재단 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업 요인은 안심소득 2단계 시범사업 운영과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센터 등의 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것으로 이는 곧 출연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어 장기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소지가 있음.
- 지난 5년간 복지재단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은 재단 예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출연금의 증가로 확인되며, 이는 복지재단의 예산이 재원이 상당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와 같이 복지재단의 수입이 보조금 사업이 다수 포함될 출연금에만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정책연구 및 경영 측면에서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표〉 2023년 서울시 복지재단 분야별 사업비 현황(세출예산 중 사업비)

(’23. 7. 31. 기준, 단위 : 백만원)

	예 산 과 목	2023년		2022년	
		사업비	비율	사업비	비율
일반 회계	합 계	12,993	100%	9,388	100%
	선도적복지정책개발	3,564	27%	1,705	18%
	사회서비스 품질향상과 복지인재양성	1,506	12%	1,792	19%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서비스 확대	2,917	22%	3,372	36%
	동단위 생활권의 복지 공공성 강화	1,896	15%	399	4%
	법률 및 금융복지서비스 지원	1,225	9%	575	6%
	변화와 혁신으로 사회적 책임경영 강화	1,885	15%	1,545	16%
	예 산 과 목	2023년		2022년	
		사업비	비율	사업비	비율
기금 회계	합 계	47,617	100%	31,242	100%
	서울꿈나래통장	1,413	3%	1,517	5%
	희망두배청년통장	30,811	63.7%	22,513	72%
	장애인이름통장	3,071	6%	3,382	11%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760	2%	760	2%
	서민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50	0%	70	0%
	청년자립토대지원금	150	0.3%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11,362	24%	3,000	10%

- 분야별 주요사업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사업비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지 서비스 확대’ 사업이며, 지역복지 인프라 구축으로 사회적고립 가구 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지역사회 통합지원(장애인전환서비스 지원 사업 등), 서울형 자산형성사업 운영지원 사업이 구성되어 있음.
- 복지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는 숨은 위기가구를 포함한 고난이도 고립가구 현장대응지원 및 Iot·AI 등 스마트기기 확대를 통한 스마트 관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적 고립가구를 체계적, 효과적으로 발굴·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 고독사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유형의 복지 사각지대로서 기존에는 경제적 취약가구 위주의 발굴에서 현재는 고독사 위험가구까지 포함하여 확대 발굴하고 있으며
-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2023년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여 ‘사회적 고립 걱정 없는 촘촘한 연결 사회’라는 비전으로 4개 추진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 이처럼 고독사 예방·관리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는 동주민센터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고난이도 고립가구 지원 및 지역별 여건 등을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임.

- 또한, 올해 신규로 추진 중인 금융위기 청년을 위한 「청년 자립 토대지원사업」에 대해서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3 복지재단 출연에 대한 타당성 검토

- 2024년 복지재단의 사업예산(안)은 923억원으로 2023년 대비 165억원 정도 증가하였으며, 이는 청년통장 대상자 수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및 안심소득 시범사업 운영 등인 것으로 파악됨.
- 복지재단의 출연 근거<sup>4)</sup>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sup>5)</sup>등 법령상의 근거와 설립 목적 및 기능 등을 감안할 때, 복지재단에 대한 2024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할 수 있겠음.
- 다만, 출연 동의안은 출연 여부(예산안 편성)만을 결정하는 것으로 예산안 제출 이후 심의 시, 복지재단의 신규 사업 추진의 적합성뿐만 아니라 기 추진사업의 효과성 및 타 사업과의 중복성을 따져봐야 할 것임. 또한 복지재단의 고유 목적에 따른 사업이 제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기금운용과 관련한 이자수익금·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